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6년 7월 11일
- 발 의 자 : 김혜정, 신원섭, 김창은, 김재관, 차순자, 오철환 의원
- 회부일자 : 2016년 7월 11일
- 상정일자 : 제24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6년 7월 20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혜정 의원)

□ 제안이유

○ 대구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지역에서 발생 하였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의 기준을 명시함(안 제4조).
- 민간인 희생자에 관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을 명시함(안 제4조).
- 지원 대상자가 아니거나 허위의 사실 등으로 부당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석동)

○ 본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인권증진 및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대구지역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중 진실규명 건수는 327 건, 불능건수는 7건으로 나타남.

< 대구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현황1 >

연번	사 건 명	진실규명 건 수	불능건수	결정일	주요 권고내용
	합 계	327	7		
1	군위·경주·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96	-	'09.09.08.	· 국가사과
2	대구경북(1-가. 국민보도 연맹 사건	106	-	'09.10.06.	· 호적정정
3	대구 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5	1	'10.03.30.	· 위령사업
4	대구·경북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106	5	'10.06.29.	· 역사기록 등재
5	대구·고령·성주·영천 민간인 희생 사건	14	1	'10.06.30.	· 평화인권교육

1)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2010년 12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제III권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P13 ~

▶ 본 조례안 제정으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여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위령사업 추진에 대하여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한국전쟁은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적인 중대 사건이므로 사실조사와 진상규명에 따른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위령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이런 맥락에서 유해안치 및 위령시설 조성 등 위령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확인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연고지는 대구라 하더라도, 희생자 발생지역은 대구시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사업규모와 비용 측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사업으로 시행하되, 대구시는 정부와 면밀히 공조하여 자체 실태조사의 가능여부와 사업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1**

**타시·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 제정 현황**

구분	법 규 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계	11개 시·도		
서울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	'15.10. 8	자치행정과
인천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5. 9.30	자치행정과
광주	광주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5. 3. 1	인권평화협력관
대전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	'15. 4.17	자치행정과
경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4.12.31	자치행정과
충북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16. 4. 1	자치행정과
충남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5. 7.30	자치행정과
전북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5. 7. 3	자치행정과
전남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5. 2.26	자치행정과
경북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5.12.31	자치행정과
경남	경상남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5.10.29	행정과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